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영선 의원 외 14인)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김영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3 |
|----------|-----|

발의연월일 : 2019. 4. 12.

발 의 자 : 김영선, 박차양, 박관수  
박미경, 이재도, 나기보  
김시환, 박영서, 박영환  
윤승오, 임미애, 김대일  
김준열, 조주홍, 이선희  
의원(15인)

찬 성 자 : ( - 인)

### 1. 제정이유

- 1회용품의 사용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로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환경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 지정 및 홍보물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5조)

마.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3. 조 례 안 : 붙임참조

###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 5. 관련부서 협의

- 법 제 심 사 : 첨부
- 규 제 심 사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의견 : 첨부
- 비 용 추 계 서 : 해당되지 않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인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는 도지사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해당 우수업체를 추천한 시장·군수가 그 추천을 철회한 경우

제5조(우수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업체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환경우수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업체 관련 정보를 도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등에 등재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라. (생략)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생략)

사. 자연보호활동

아.~거. (생략)

5.~6. (생략)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종별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 업종별로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폼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제7조(사업장의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사업장(이하 '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홍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 조례명: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환경정책과 | 제4조제1항   | <문장 수정 필요><br>“환경우수업체” => 환경우수업체                                                                    |
|       | 제4조제2항   |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천만 받으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지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바, “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 제4조제3항   | <주어 추가 및 문장 수정 필요><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지사는<br>제2호: 당해 => 해당 |

## 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                                                                                          |               |             |
|-------------|------------------------------------------------------------------------------------------|---------------|-------------|
| 자 치 법 규 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             |
| 평 가 담 당     | 감사관실                                                                                     | 직 급 성 명       | 행정7급 김 구 열  |
| 입 안 주 무 부 서 | 의원발의                                                                                     | 통 보 ( 조 치 ) 일 | 2019. 4. 4. |
| 관 련 조 문     | 검 토 결 과                                                                                  |               | 조 치 사 항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li> </ul> |               |             |

## 평 가 항 목 별 검 토 자 료

###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해당 여부 | 응답내용      | 첨부사항  |
|------|----------------|-------|-----------|-------|
| 준수   | 준수부담의 적정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높음      |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X     | ① 적당      | 해당없음. |
|      |                |       | ② 약함      |       |
|      |                |       | ③ 강함      |       |
|      | 특혜발생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집행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X     | ① 구체적·객관적 | 해당없음. |
|      |                |       | ② 추상적·주관적 |       |
|      |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X     | ① 적정      | 해당없음. |
|      |                |       | ② 부적정     |       |
|      | 재정누수 가능성       | X     | ① 명확      | 해당없음. |
|      |                |       | ② 불명확     |       |
| 행정절차 | 접근의 용이성        | X     | ① 있음      | 해당없음. |
|      |                |       | ② 없음      |       |
|      | 공 개 성          | X     | ① 예측가능    | 해당없음. |
|      |                |       | ② 예측곤란    |       |
|      | 예측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부패통제 | 이해충돌 가능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X     | ① 없음      | 해당없음. |
|      |                |       | ② 있음      |       |

#### 4 해당부서 검토의견서 (환경정책과)

| 실·과   | 주요내용(조항) | 검 토 의 견          |
|-------|----------|------------------|
| 환경정책과 |          |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 없음 |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5조(우수업체 지원) 도지사는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조례안 제7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업체 및 민간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으로 예상

### 4. 작성자

- 환경정책과 지방환경주사보 최지환 (054-880-3539)



# 경 상 북 도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 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1. 환경정책과-7980(2019.4.10.)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조 례 명                      | 검 토 의 건                                                                                                                                                                                                         |
|----------------------------|-----------------------------------------------------------------------------------------------------------------------------------------------------------------------------------------------------------------|
| 경상북도<br>1회용품 줄이기<br>지원 조례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업체 및 민간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는 담당부서 비용추계 의견(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li> </ul> |

끝.

## 예 산 담 당 관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전결 2019. 4. 11.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4175

(2019. 4. 11.)

접수 환경정책과-8134

(2019. 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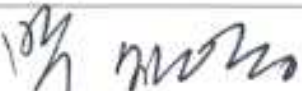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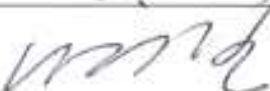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156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3-950-2159 / redjak@korea.kr

/ 비공개(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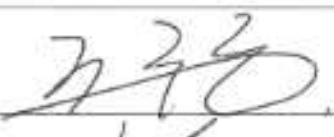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성명        | 서명 및 날인                                                                              | 비고 |
|-----------|--------------------------------------------------------------------------------------|----|
| 김 영 선     |     |    |
| 백 차 인     |     |    |
| 백 찬 숙     |     |    |
| 백 미 연     |   |    |
| 이 재 도     |   |    |
| 나 기 보     |   |    |
| 김 디 현     |  |    |
| 박 영 시     |   |    |
| 박 영 환     |   |    |
| 윤 동 인     |   |    |
| 오 A I O Y |   |    |
| 김 태 일     |   |    |
| 김 준 영     |   |    |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안)

| 성명    | 서명 및 날인                                                                           | 비고 |
|-------|-----------------------------------------------------------------------------------|----|
|       |                                                                                   |    |
| 조 주 흥 |  |    |
| 이 선 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